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월 10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1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수도 요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고, 수급자, 장애인 세대 등 요금 감면 사유를 추가 신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용량 과다, 미납 등의 원인으로 인한 과다요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 2) 수도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써 정수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징수 폐지(안 제33조제5호)

-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위기 발령하는 때,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요금감면 사유로 신설추가(안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군민의 과다사용, 누수 등에 따른 수도 요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요금감면 대상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군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과도한 수도의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요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분할 납부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3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9.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
10.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과다한 수도의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요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분할 납부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u></p>
<p>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 4.(생략) 5. <u>제38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u></p>	<p>제33조(수수료) ----- ----- ----- -----.</p> <p>1. ~ 4.(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 설></u></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 6.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확산으로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8조</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정수처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생 략)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9.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

10.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11.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 제1항 제1호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35조제1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9.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
10.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
연락처	(033) 330 - 2506